

제209회 1차 정례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

2017. 6. 14.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 1327호
----------	---------

2017. 6. 14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7.02.27
- 나. 회부일자 : 2017.03.02
- 다. 상정일자 : 2017.03.08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정관훈 의원

나. 제안(제정)이유

도시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(CPTED,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)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, 자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
-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7조)
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(안 제8조)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9조)
- 광진구청 각 부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하도록 규정함 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22조, 『건축법』 제53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3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의3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입법예고 : 2017.2.27 ~ 2017.3.3 (결과 : 의견없음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심경석)

- 의안번호 제1327호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』은 2017년 2월 27일 정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3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생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(CPTED)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광진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.
- 조례(안)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,
 - 안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 구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음.

-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하도록 규정 하였으며, 그 기능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광진경찰서,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**종합 검토의견으로**

- 본 조례안은 도시범죄의 지능화·다양화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범죄 문제에 대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요인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,
-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10개 자치구, 전국 1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.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광진구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